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08
----------	-------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박해철 · 박지원 · 이병진
송재봉 · 김종민 · 김정호
박 정 · 이연희 · 송옥주
전용기 · 이수진 · 한민수
김주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신체검사자료를 위한 검사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명시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구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또한 신체검사 관련 서류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음에도 해당 서류의 반환에 대해서도 별다른 규정이 없음.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해서 서류심사 단계부터 전체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서 구직자의 채용준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서 신체검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채용서류 반환에 신체검사자료를 명확하게 해서, 구직자의 채용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2 신설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채용서류”를 “신체검사자료를 포함한 채용서류”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 (신체검사자료의 제출 제한) 구인자는 서류심사에 합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신체검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u>채 용서류</u>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 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략) <신설>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 ----- ----- 신체 <u>검사자료를 포함한 채용서류</u>--- ----- ----- ----- ----- ----- ----- -----. ② ~ ⑥ (현행과 같음) <u>제13조의2 (신체검사자료의 제출 제한)</u> 구인자는 서류심사에 합 격한 구직자에 한정하여 필요 한 범위에서 신체검사 관련 자 료를 제출하게 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